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0일, 서천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천호 의원)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2025년 12월 20일 폐지가 예정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제

도 운영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교역적자¹⁾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인 데다 2020년 체결되고 2022년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²⁾의 영향과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³⁾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체결 FTA의 개선 협상 여지가 있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일몰에 따른 폐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⁴⁾.

2024년 10월, 전국농민회총연맹⁵⁾은 <2024년 국정감사 전국농민회총연맹 4대 요구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을 요구한 바 있음.

종합하면,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일부 품목에 대한 소득안정의 효과가

1) 교역적자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은 상황

2) RCEP은 2020년 11월 15일에 공식 서명되었고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음.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며,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공동시장으로, 2018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4)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감사(2024.10.24.) 시 전종덕의원 질의요지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집행률이 낮고, 관세 철폐가 연속해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

5) 전국농민회총연맹(全國農民會總聯盟, 약칭 전농)은 1990년 4월에 창립되어 농민들의 권익 보호와 농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전국의 농민 조직을 총괄하며, 농업 정책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 농민 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있다고 판단되고, 아직 개방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